

법제위원장이 총 점검을 하며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포함한 요구를
일부 수렴하고 일부 삭제된 상태로 상집위에 올렸습니다.(장애인법카페모임 회의자료실)
이에 대해 다시 아래의 내용으로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.
이미 검색이 상당히 된 채이고, 법제위원장과 의 통화로 이해상충이 있어 아래의 내용은 여
성팀원들의 카페를 통한 의견개진으로 담아내야 할 듯합니다.

상집위에 법안이 송부된 이후에는 일정 정도 경우에 따라 법제정위원장단은 같은 입장을 나
타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수용되길 바랍니다.
그렇다고 자신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내려는 위원장 입장을 탓할 수도 없지요.
(그것 때문에 여성팀에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운 듯한데 기운을 넣어 줄 필요도 있고요...)

고용 부분의 보완을 그나마 포괄적으로 하려했는데,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담
을 규정은 총칙 3조 3항밖에 없습니다. 구체성은 없고...

장애인법 카페나 이곳에 의견 달아주십시오.

여성팀장으로서의 의무감에 급하게 일단 관련된 부분만 읽고 재차 부탁드립니다.
아래를 보시고 현재의 초안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.
그 외의 사항에 대한 여성장애인들의 요구는 이후의 절차에 의해야겠지요.
여기까지만 일단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카페에 올리기 전에 먼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랐는데...
급하게 메일을 보내고 학교에 가야하니, 긴 통화는 어렵겠습니다.

제6조(여성장애인의 권리)

① 여성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
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. 특히(교육, 고용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, 정적인
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.

- 이 부분이 중언부언되었다기 보다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가장 포
괄적 부분일 것입니다. 특히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는 성별적 차별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
도 각 절 간주행위에서 많은 세세한 차별행위를 담는 것에 무리가 있습니다. 정히 적합하지
않게 보이신다면 "특히..."이하를 빼셔도 좋습니다.

제1절 고용 제10조

10호 추가 :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지원
제도 시행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/ 불이익을 주거나,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
지 않고 부당하게 처우하는 경우

- / 이하는 "부당하게 처우하는 경우"로 하셔도 좋습니다.

제9절 모·부성권 제37조

6호 수정 : 출산 등의 관련기관이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
어서 관련된 정보나 활동보조인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

- "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"과 "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"로 분리한 것은 모자 보
건법이 모부자 복지법으로 개정된 취지에 맞추어 양육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풀어내고
자 한 것입니다.